#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38 2018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 Ⅰ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18. 8. 16.
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3. 회부일자 : 2018. 8. 21.

4. 상 정: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18. 9. 11.)
 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18. 9. 12.)
  - 질의 및 답변, 원안의결

### Ⅱ. 제안설명 요지 (기획조정실장 강태웅)

### 1. 제안이유

O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서

울특별시의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에서 다음연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에 자금을 예탁하거 나 특별회계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의 원금 상환 및 이 자납입에 따른 기금수입 증액분 3,550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
- 교통사업특별회계(교통개선분담금계정) 151억원, 주택사업특별회계 975억원,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,500억원 등은 특별회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 기금역할을 하는 재정투융자기금에 2,626억원을 예탁하고, 교통사업특별회계(교통관리계정) 645억원, 도시개발특별회계 68억원,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억원,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억원 등 924억원은 특별회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임
- O 증액된 수입금 3,550억원은 209년 특별회계 및 기금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

# 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엄지운)

### 1. 주요내용

-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에 대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수금이 발생하고, 예탁금 원금회수 금액이 상향조정되어.
-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〈표 3-1〉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·지출 계획변경(안)

(단위 : 백만원)

< 수입계획 >				
목	당초계획	변경계획	증·감	
	(A)	(B)	(B-A)	
합 계	606,516	961,562	355,046	
융 자 금 원리금화수	21,974	21,974	_	
예 수 금	55,446	318,055	262,608	
예 탁 금 원금회수	215,914	300,693	84,779	
예 치 금 회 수	286,527	286,527	_	
이자수입	26,654	34,313	7,659	

	< 지출계획 >					
	편성목		<u>1</u>	당초계획	변경계획	증·감
				(C)	(D)	(D-C)
,	합		계	606,516	961,562	355,046
	<del>ģ</del>	자	山	15,200	15,200	-
	예	탁	금	15,000	15,000	_
	예 상	누원리	금 환	222,865	222,865	_
	예	치	급	353,449	708,495	355,046
	フ] <del>-</del>	본경	비	2	2	_

#### 2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 제2항¹)은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 - 다만, 재무활동에 포함되는 예치금은 정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을 통하여 재무활동을 정책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는바2)
 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지출항목인 예치금을 현행보다 3,550억 4,600만원 증액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의 변경범위가 100.5% 증가되어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
  - 아울러 동 기금의 경우, 직전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증가됨에 따라 각 회계별로 여유자금이 발생함에 따라 각 회계와 기금간 전·출입에 따른 의존도를 낮추고자 타 회계의 여유자금(예수금 2,626억 800만원³))과 타 회계에 맡겨둔 예탁금 원금(847억 7.900만원⁴)) 및 이자수입(76억 5.900만원⁵))을 수입계획에

<sup>1) 「</sup>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전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 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<sup>2)</sup> 행정안전부, 「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, p.294

<sup>3)</sup> ① 교통사업특별회계(151억 800만원)

② 주택사업특별회계(690억원+100억원+185억원)

③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(1,500억원)

편성하고,

- 수입계획의 변동에 따라 발생된 여유자금 등 3,550억 4,600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 하는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이 설치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# Ⅳ. 심사결과 : 원안의결(2018.9.12.)

- 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2.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  - 1) 소위원회 구성
    - 일 자 : 2018. 9. 12(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    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    - 위원구성 :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소위원회(9명)
      - 위 원 장 : 김광수(환수)
      - 부위원장 : 우형찬(교통), 장상기(교육)
      - 위 원 : 김용연(보건복지), 김인호(문화체육관광), 김정

태(기획경제). 김호평(행정자치). 이상훈(도시

계획), 정진술(도시안전),

<sup>4)</sup> ① 일반회계중 예탁금 원금회수(645억원)

②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중 예탁금 원금회수(202억 7,900만원)

<sup>5)</sup> ①도시개발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(67억 8400만원),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(10억 1.700만원)

②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(△1억 4,300만원)

### 2)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

#### 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9. 12(수) 14:00 ~ 21:50
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

◇ 첨 부 :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. 끝.

#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	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번호 50	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#### 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에 대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수금이 발생하고, 예탁금 원금 회수 금액이 상향조정되어.
- 나.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(단위 : 백만원)

〈 수입계획 〉			
구 분	'18년(A) 기정	'18년(B) 2차변경	증 감 (B-A)
합 계	606,516	961,562	355,046
융 자 금 원리금회수	21,974	21,974	_
예수금1)	55,446	318,055	262,608
예 탁 금 원금회수 <sup>2)</sup>	215,914	300,693	84,779
예 치 금 회 수	286,527	286,527	_
이자수입2)	26,654	34,313	7,659

	〈 지출계획 〉			
구 분	'18년(C) 기정	'18년(D) 2차변경	증 감 (D-C)	
합 계	606,516	961,562	355,046	
융 자 금	15,200	15,200	_	
예 탁 금	15,000	15,000	_	
예수원리금 상 환	222,865	222,865	-	
예 치 금 <sup>3)</sup>	353,449	708,495	355,046	
기본경비	2	2	_	

- 1)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 : 262,608백만원
  - 교통사업특별회계(15,108백만원), 주택사업특별회계(97,500백만원)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(150,000백만원)
  - 2) 특별회계 예탁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증액: 92,438백만원
    - 교통사업특별회계(64,500백만원), 도시개발특별회계(6,785백만원),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(1.017백만원),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(20.136백만원)
  - 3) 예치금 증액 : 355,046백만원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